서세동점,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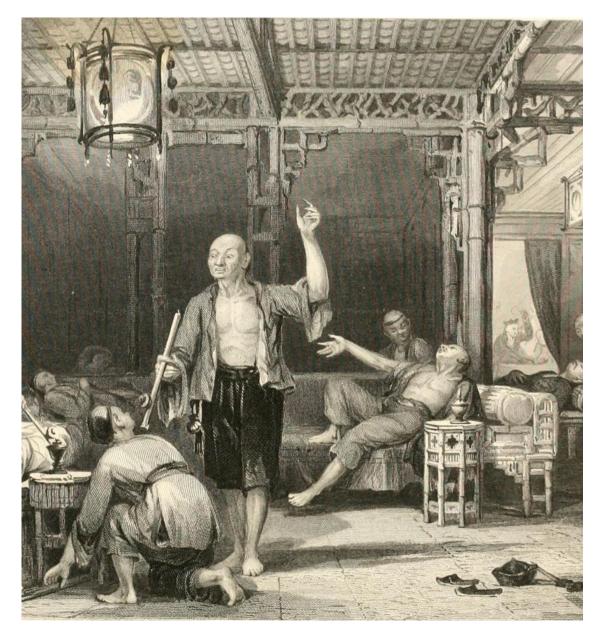
담당교수: 배민재

아편전쟁 (Opium War)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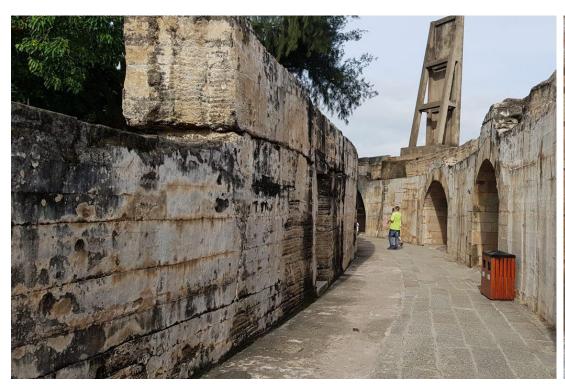








호문포대(虎門砲臺)







아편전쟁박물관(鴉片戰爭博物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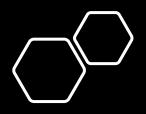




해전박물관(海戰博物館)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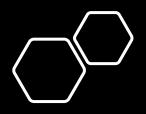
난징조약 (남경조약)

- ① 광주(廣州), 하문(厦門), 복주(福州), 영파(寧波), 상해(上海) 5개 항을 개방한다.
- ② 公行(洋行)의 무역 독점을 폐지한다.
- ③ 공평하고 정규적인 수출입 관세를 설정 공포한다.
- ④ 개방되는 5항에 영국영사를 상주시킨다.
- ⑤ 중영 양국 관헌은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를 교환한다.
- ⑥ 홍콩을 영구히 영국에 할양한다.



난징조약 -추가협정

- ① 관세율은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가(從價) 5%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개방되는 5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하여는 영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행사한다.
- ③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(最惠國待遇)를 부여한다.
- ④ 영국은 개방되는 5항에 군함 1척을 상시로 정박시킬 수 있다.



1858년 텐진조약 (천진조약),

- ① 체약국의 외교사절은 가족을 동반하고 北京에 상주 또는 수시로 왕래하여 청조의 내각대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대관들과 대등하게 접촉하며,
- ② 이미 개방된 5港 이외에 牛莊·登州·漢口· 九江·鎭江 등 11개항을 추가로 개방하고,
- ③ 체약국 국민은 각기 자국 영사가 발급하고 중국 관헌이 인준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내지를 여행할 수 있다.
- ④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와 외국인의 선교활동의 자유를 보장
- ⑤ 중국인의 해외 도항을 공식으로 인정